

##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

### 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351 어업권임의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3. 9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김병대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09.12.15. 근저당권		배당요구종기	2025. 8. 12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조사된 임차내역없음										
<p>&lt;비고&gt;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해당사항없음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 <p>해당사항없음</p> <p>비고란</p> <p>①어업권(양식업권)취득에 관할관청의 어업권(양식업권)이전인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관청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.(수산업법 제19조 제1항,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 제1항)</p> <p>②취득자격은 매수인이 별도 확인해야 함.</p> <p>③축제시설 포함하여 감정평가진행 축제시설은 현장조사로 측량하여 진행</p> <p>④어장 주변 관리사 등 건물과 어장관리선은 위탁관리운영하는 자의 소유로 주장되어 감정평가에서 제외함</p> <p>⑤어업권의 허가기간은 2016.11.29.~2026.11.28.일까지임.</p>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## 어업권의 표시

2025타경351

[물건 1]

- 1. 어업및어구의 명칭 : 축제식  
면허번호 : 포항 제146호  
어장의 위치 :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지선  
체포물의종류 : 어류, 전복  
어업의시기 :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 
존속기간 : 2009년 8월 21일부터 2016년 11월 28일까지  
연장허가기간 : 2016년 11월 29일부터 2026년 11월 28일까지  
면허년월일 : 2009년 8월 21일

감정평가액		750,000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3.09	750,000,000	75,000,000
2회	2026.04.06	525,000,000	52,500,000
3회	2026.05.04	367,500,000	36,750,000
4회	2026.06.08	257,250,000	25,725,000

- ①어업권(양식업권)취득에 관할관청의 어업권(양식업권)이전인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관청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.(수산업법 제19조 제1항,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 제1항)
- ②취득자격은 매수인이 별도 확인해야 함.
- ③축제시설 포함하여 감정평가진행  
축제시설은 현장조사로 측량하여 진행
- ④어장 주변 관리사 등 건물과 어장관리선은 위탁관리운영하는 자의 소유로 주장되어 감정평가에서 제외함
- ⑤어업권의 허가기간은 2016.11.29.~2026.11.28.일까지임.